◉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05호

「약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02월 21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가. 처분대상자 : (주)동서메디칼 제조관리자 김*혁

나. 업종(허가번호) : 의약외품 제조업(제0759호)

다. 소재지 :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1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50만원(납부기한 : 2022. 3. 17.까지)

*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(053-589-2705, 2799)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처분사유

○ 제조관리자(김*혁) 교육 미이수(2020.12.31.까지 미이수)

4. 근거법령

○ 위반법령 :「약사법」제37조의 2(제조관리자 등의 교육)

○ 근거법령 :「약사법」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

[별표3]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차목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,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
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
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
○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의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

(Tel : 053-589-2799, Fax : 053-592-2709 , E-mail : jhgold@korea.kr)